

『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
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1선거구 이영실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
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
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
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지난해 10월 입양 뒤 양부모의 학대와 방조로 사망한
16개월 아동의 사망사건을 포함하여 잇단 아동학대범죄에
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
- 이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
동주민센터 방문 인력 및 통·반장에게 아동학대 인지 시
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게 알리고 조사 및 사례관리에
협조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안 제13조의2제1~2항을 신설해 아동학대 업무 수행인력 및 통반장 등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에 신고하거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즉시 알리도록 하고, 제13조의2제3항은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나 사례관리를 위한 협조요청 시,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 필요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